

<p>천마의 집의 住所를 變更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다음은 서울Education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하여 審查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,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下에 11人 이내의 서울Education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Education財政計劃樹立, 財政運營Direction, 財源調達, 投資事業計劃樹立 등에 관한事項을 審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委員會에서 審查한바, 地方自治法 第15條 및 地方財政法 第16條의2에 근거하여 本委員會를 設置하여 Education財政計劃樹立, 財政運營Direction, 財源調達, 投資事業計劃樹立 등에 관한事項을 審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이것은當委員會에서 執行部의 說明을 듣고 그리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마친 후 우리委員들이深深한 討議를 거쳐서 滿場一致로 可決했습니다.</p> <p>아무쪼록 深思熟考하셔서 原案대로 可決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文化Education委員會에서 審查報告한 서울特別市教育·學藝에關한Education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Education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(參照)</p> <p>서울특별시교육·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·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호의 표중 대성의 집 위치란을 다</p>	<p>음과 같이 하며, 천마의 집 위치란의 “남양 주군 미금시”를 “남양주시”로 한다.</p> <p>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48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56번지 의 6호</p> <p>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4 조(시행세칙) 각 교육원의 직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소속하에 두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교육감이,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·국장</li> <li>2.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</li> </ol> <p>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 3 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 4 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</p>
--	---